

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

제5주제 **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**



## 신상공개제도 개념

일정한 성범죄(성폭력범죄를 포함)를 저지른 자의 성명, 연령 등의 신상과 범죄 사실의 요지를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 확정 후 공개하는 제도

구(舊)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7801호, 2005.12.29., 일부개정]

제20조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전국에 게시 또는 배포함에 있어 해당 범죄자의 성명, 연령,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

## 신상공개제도의 변화

### 신상정보의 처리방식

공개(2006년) → 등록 · 열람(2008년)  
→ 등록 · 공개 · 고지(2010년)

### 등록기간

10년(2008년) → 20년(2010년)

### 결정의 주체

국가청소년위원회(행정기관, 2006년) → 법원(2008년)

### 적용 대상자의 범위

아동 ·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 
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까지 확대(2011년)

# 신상정보 등록제도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
[법률 제11729호, 2013.4.5., 일부개정]

## 등록대상자(제42조 제1항)

1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
2. 성인 대상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

- **등록대상 성범죄**: 강간, 강제추행,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,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행위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## 등록내용(제44조)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. 성명               | 2. 주민등록번호 | 3.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 |
| 4.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 |           | 5.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  |
| 6.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     | 7. 사진     | 8.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|
| 9. 성범죄 전과사실(죄명, 횟수) |           | 10. 전자장치 부착여부    |

## 등록기간(제45조)

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

# 신상정보 공개제도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1574호, 2012.12.18. 타법개정]

## 공개명령의 대상자(제49조 제1항)

1. 아동·청소년대상 **성폭력범죄**를 저지른 자
2.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
3. **13세 미만**의 아동·청소년대상 **성범죄**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위험자
4.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재범 위험자

## 공개정보(제49조 제3항)

1. 성명
2. 나이
3. 주소 및 실제 거주지(도로명·건물번호까지)
4.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
5. 사진
6.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
7. 성폭력범죄 전과사실
8. 전자장치 부착여부

## 공개방법(제49조 제1항)

(계속)

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- 법원의 판결로 명령

**공개정보 악용금지(제55조)**

1. 아동·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**사용 목적 제한**
2. 고용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제외),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,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차별하는 것 금지

**신상정보 고지제도**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
[법률 제11574호, 2012.12.18. 타법개정]

**고지 대상자(제50조)**

1. 아동·청소년대상 **성폭력범죄**를 저지른 자
2.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
3.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재범 위험자

**고지 방법(제50조, 제51조)**

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(공개정보, 상세주소, 전출정보)를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(우편송부 및 주민자치센터에 30일간 게시)

## 신상공개제도에 **찬성** · **반대**하는 근거

### 찬성하는 논거

- (1) **청소년 보호**의 증대성
- (2) 이중처벌금지와 무관
- (3) **범죄예방**의 효과
- (4) 범죄자의 권리포기
- (5) 성범죄의 **반복성**

### 반대하는 논거

- (1) **범죄자 기본권**의 침해
- (2) **평등원칙** 위반
- (3) **이중처벌금지** 위반
- (4) 범죄예방효과 부정
- (5) 적법절차 위반

## 신상공개제도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### 1.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

(1) 행위관련적 자유와 상태관련적 자유

- ① 행위와 관련된 자유 - **일반적 행동자유권**
- ② 상태와 관련된 자유 - **일반적 인격권**

(2) 상태관련적 자유로서

**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**

## 신상공개제도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### 2.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

제한될 수 있는 **상대적 권리**

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한가능성

##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**제한의 정당성**

### 1.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

### 2.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

- ① 사실상의 불이익
- ② 범죄예방의 효과
- ③ 범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, 낙인효과, 사실상의 다른 기본권 침해

## 전자발찌(전자장치)의 문제

2008년 성폭력 예방 목적으로 일명 **전자발찌**  
(전자장치)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[**특정 성  
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 
률**] 제정, 2012년 **법명 변경**



**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 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(계속)**

**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**

[법률 제11572호, 2012.12.18., 타법개정]

**제5조 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**

-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**성폭력범죄**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부착명령”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1.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
  2.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  3.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  4.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  5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
- ② 검사는 **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**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(후략)
- ③ 검사는 **살인범죄**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(후략)

# 토론

1. 신상공개는 **범죄예방**에 효과적이거나?

2. 신상공개로 **재범의 위험성**을 방지할 수 있는가?

3. 신상공개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떠한 **대안**이 가능한가?